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대상 사업장 대폭 확대

## 하반기부터 건설근로자 처우개선 본격 추진

내년부터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대상 사업이 '5억원 이상 공공공사와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된다. 또 사업주가 내는 납입금액이 1일 4,000원으로 높아진다.

건설교통부는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임금 등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건설 일용근로자의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퇴직공제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건설교통부의 퇴직공제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10억원 이상 공공공사, 300호 이상 공동주택공사에 적용중인 대상 사업장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08년부터는 5억원 이상 공공공사 현장, 200호 이상 공동주택 공사현장으로 확대되고, 그간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주상복합공사에 대해서도 200호 이상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대상 사업장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퇴직공제제도는 법정퇴직금 제도의 혜택에서 소외된 건설근로자의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지난 '96년 처음 도입된 이래, 대상 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이번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공사금액 기준으로 대상 사업장은 44.8%(50조/112조)에서 53.1%(59조)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하루 3,000원으로 책정된 사업주의 퇴직공제납입액도 내년부터 4,000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히,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하반기부터 건설근로자 처우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은 지난 4월 건설산업기본법개정, 7월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과 근로기준법 등의 개정으로,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등 그간 계속 제기되었던 현안사항들이 대부분 해소되어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판단 아래, 이 들 법률의 하위법령 정비를 계기로 불법다단계 하도급 근절, 건설근로자 전문성 제고 등 보다 폭넓고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병행해 나가기 위함이다. ●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운영현황

### ① 도입목적(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근로자고용개선기본법)

○ 법정퇴직금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건설일용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지급 등 근로복지혜택 확대('96.12)

### ② 제도 운영현황

구 분	설치기준
대상공사	· 10억원 이상 공공공사, 300호 이상의 공동주택공사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서 공사에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가입 근로자	· 건설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 (상용근로자 및 근로시간이 소정기준 미만인 자는 제외)
납입의무자 및 납입금액	· 사업주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에 의거 산정한 공제 부금액(3,000원/일)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에 납부
지급요건	· 건설근로자가 자영업, 정규직 전환, 다른 업종으로 이직 등의 사유발생시 퇴직공제 금 지급 · 청구

### □ 퇴직공제 가입근로자 가입현황

구 분	총 가입 근로자수	퇴직자 수	현재 가입 근로자수
	1,573,542명 (100%)	57,307명 (3.6%)	1,516,235명 (96.4%)

###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개선방안(건설법 시행령 개정, '07말)

구 분	현 행	개 선
적용 공사	(1) 10억원 이상 공공공사 (2) 300호 이상 공동주택 공사	(1) 5억원 이상 공공공사 (2) 200호 이상 공동주택공사 (3) 공기업 자회사 공사 및 200호 이상 주상복합공사
사업주 납입액	3,000원/일	4,000원/일

개선내용	현행	개선	비고(시행시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개선	· 10억원 이상 공공공사 · 300호 이상 공동주택	· 5억원 이상 공공공사 · 200호 이상 공동주택공사 · 200호 이상 주상복합공사	건설법 시행령 개정('08)